

[별표 3]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기준(제6조 관련)

구 분	내 용	점 수	
		비경활*	청년특례**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40	50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초과 50% 이하	30	45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	20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 80% 이하		40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초과 100% 이하	-	35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120% 이하		30
재산의 합계액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	30	30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22	22
	재산의 합계액이 2.5억원 초과	14	14
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취업한 기간이 총 60일(또는 480시간) 이상인 경우	30	20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취업한 기간이 총 30일(또는 240시간) 이상, 60일(또는 480시간) 미만인 경우	22	12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취업한 기간이 총 30일(또는 240시간) 미만인 경우	14	4
자녀	미취학연령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산점 5점 부여	가점 5점	가점 5점
유사 제도 및 사업 수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제8조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제9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감점 10점	감점 10점
	신청일 이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제8조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제9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감점 5점	감점 5점
구직의사 및 건강상태	구직의사가 없거나, 건강 상태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에서 제외		

*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점수

**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점수

※ 합산 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의 순서(① → ② → ③)에 따라 점수를 비교하여 우선순위 결정

①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②재산의 합계액, ③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